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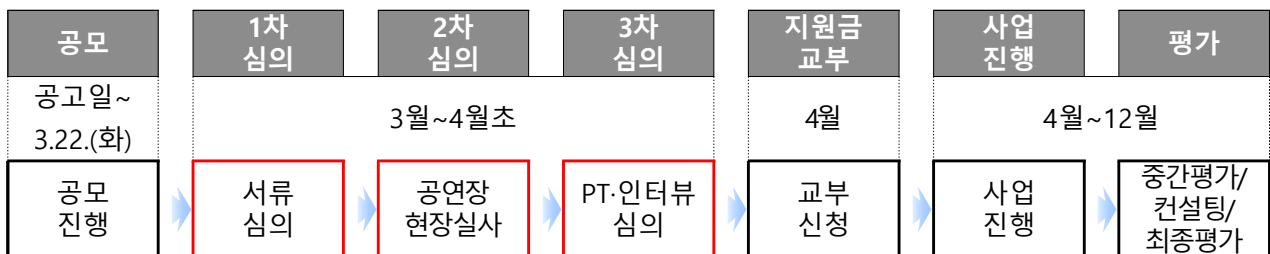
# 2022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공고문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의 핵심목적은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으로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하여  
공연장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며, 공동성장 하는 것입니다.

## 1 공고개요

- 공 고 명: 2022년도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공모
- 공모기간: 공모일 ~ 3. 22.(화)
- 사업내용
  - 1) 공연장-예술단체 협약을 통한 집중육성지원 (12개팀내외 선정예정)
  - 2) 체계적인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한 환류 및 역량강화

※ 비평/컨설팅 프로그램은 필수로 참여해야함.
- 지원내용
  - 예술단체의 사업비(초연, 레퍼토리공연, 퍼블릭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 공연장의 필요경비(프로그램운영, 작품제작, 홍보/마케팅 등) 지원
- 지원규모 및 기간: 최소5천만원~ 최고 1억원 (단년도/다년도(최대3년))
- 추진일정(안)



## 2 주요개선사항

구 분		2021년 (개선전)
지원자격 변경	공연장	- 공공공연장(8개)
평가 및 환류강화		- 전문가평가 진행 (평균 연2회) - 별도의 환류 없음
사업의 재원		- 국비/시비 매칭
지원트랙 이원화 폐지		- 제작형과 상주형 이원화
지원규모 변경		- 제작형: 8천만원~1억원 - 상주형: 6천만원~8천만원
연속지원		- 단년도/다년도 (최대2년)
졸업제 시행		- 총 6년을 초과하여 수혜받은 우수공연예술단체 졸업제 도입 (2021년 유예, 2022년부터 시행)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사용 가능		- 경비사용 불가능
교부신청 및 정산시스템		- 이나라(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신청 및 선정건수		- 1공연장당 2개단체를 매칭하여 신청 할 수 있으나 선정은 1개 단체만 가능
심의방식 변경		- 서류/PT심의



2022년 (개선후)
- 공공공연장 (6개 내외) - 민간공연장 (6개 내외)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 공연장은 비평(평가) 및 컨설팅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 환류계획 별도 안내
- 전액 시비
-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협약으로 공동성장 할 수 있는 창작 활동 및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5천만원~1억원
- 단년도/ 다년도(최대3년)
- 졸업제 시행
- 최대 200만원 내에서 사용가능 → 회의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사용
- 1개 공연장당 1개 단체만 매칭하여 신청 할 수 있음
- 1차: 서류심의 - 2차: 공연장 현장실사 - 3차: PT·인터뷰심의

### 3 세부 공모내용

#### □ 지원신청자격(대상)

구분	예술단체	공연장												
공모신청 주체	○	-												
지원조건	- 최근 5년간(2017~2021) 3회 이상 부산에서의 공연실적이 있는 예술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단체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전 부산을 소재지로 두고 있는 공연장</li> <li>- 공연장 등록을 마치고, 공연장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연장</li> </ul> <p>※ 미등록 공연장일 경우, 향후 공연장 등록에 대한 계획 및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서식1-&lt;4-5&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분야</th> <th>지원 대상 단체</th> </tr> </thead> <tbody> <tr> <td>연극</td> <td>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td> </tr> <tr> <td>무용</td> <td>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td> </tr> <tr> <td>음악</td> <td>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td> </tr> <tr> <td>전통 예술</td> <td>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 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td> </tr> <tr> <td>기타</td> <td>기타 공연예술분야</td> </tr> </tbody> </table>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전통 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 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기타	기타 공연예술분야
	분야		지원 대상 단체											
	연극		연극분야(아동·청소년극, 뮤지컬 포함) 전문극단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음악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단체											
	전통 예술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 예술창작·공연전문단체											
기타	기타 공연예술분야													
핵심 목적	<p>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b>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을</b>으로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장 가동률을 증대하여 공연장의 운영목적을 달성하며 공동성장 하는 것입니다.</p> <p>이에, 사업 취지에 맞게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유연한 협업과 지원이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p>													
협약 체결	<b>공연장과 예술단체 매칭 및 협약 체결</b>													
신청 및 선정건수	<공연장↔예술단체> 1건만 신청 및 선정 가능													

## □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단년도지원: 최소5천만원 ~ 최대1억원

- 다년도지원: 3년간 최대 3억원 (연간 최대 1억원 지원)

※ 다년도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 종료 후 성과평과를 통한 지원금 결정

### ○ 지원예산 및 편성

항 목	내용	편성비율(금액)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예술단체 사업비	- 예술단체의 프로그램 (창작초연공연, 레퍼토리공연, 퍼블릭 프로그램,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경비 ex) 제작비, 재료비, 출연료, 사례비, 임차비, 홍보비 등	50~100% (필수편성)	50~100% (필수편성)
예술단체 운영비	-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 ① 기획 및 행정인력(전담인력)의 인건비 ② 예술단체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외의 경비 (사무용품 대여 및 소모품 구입 등)	0~40% (선택편성)	0~30% (선택편성)
	(신규) 사업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 → 회의비, 식비, 다과비 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경비	최대200만원 편성가능	
공연장 필요경비	-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연장이 필요로 하는 경비 → 프로그램운영, 작품제작, 홍보/마케팅,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등	0~10% (선택편성)	0~20% (선택편성)

#### ※ 편성 및 집행 불가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단체 대표자의 급여성 인건비,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직원의 급여성 인건비 및 단체 운영경비
- 당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과 무관한 단순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
-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간접경비

\* 사업과 관련된 목적으로 협업 예술단체에게 제공하는 공연장 및 연습실 사용료 등은 편성 할 수 없습니다.

## □ 협약조건(지원조건)

공연장역할	예술단체역할
<p>재단이 제시한 협약서를 준용하여 공연장과 예술단체는 직접 <b>협약체결</b>을 하고 공모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p>	
<p>① 협약 예술단체에 창작 및 사무공간, 연습 공간 등 무상으로 제공</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연습실: 공연장 혹은 연습이 가능한 공간에서 예술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연습실이 없을 경우, 공연장을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별도계획을 제출해야함.</p> <p>- 사무공간: 사무를 위한 공간 및 사무용품제공</p> <p>- 기타공간: 예술단체와 협약을 통한 기타 편의시설 제공 및 별도 계획 마련</p> </div>	<p>① 우수 공연·프로그램 개발 및 노력</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공연장과 협약을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유롭게 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작초연 공연</li> <li>2) 우수레퍼토리 공연</li> <li>3) 퍼블릭(체험,교육 등)프로그램 운영</li> <li>4) 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li> <li>5) 타분야, 타지역 예술단체 교류공연 등</li> </ol> </div>
② 협약 예술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 우선권 부여	② 사업추진시 관련 제반사항 주체적으로 수행 (작품 기획·제작, 프로그램운영 등)
③ 협약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업 ※ 전담기획인력 확보 등	③ 퍼블릭 프로그램 (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개발 노력
④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④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⑤ 예술단체와 적극 협업을 통한 성과제고	⑤ 공연장과 적극 협업을 통한 성과제고
⑥ 보조금 정산 시 세부내역 정산 협조	⑥ 보조금 정산 총괄
⑦ 부산문화재단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및 요청자료 협조	⑦ 부산문화재단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 및 요청자료 협조
<p>※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사정상 해당 협약조건(지원조건)의 제공이나 실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의 목적에 맞게 협업방안을 보완·제시해 주시면 됩니다.</p>	

## □ 지원신청 제한사항

### ○ 신청불가능한 예술단체

- ①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② 정부·지자체 및 산하 국립·공립 출자·출연기관(한국방송광고 공사 포함)으로부터 국고·지방비(방송발전기금 포함)를 정규예산으로 지원 받는 단체
- ③ 언론사·학교·학원·종교·친교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
- ④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 ⑤ 보조금 위반행위를 한 단체 (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 기준에 따름) 혹은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단체
- ⑥ 부산문화재단 내 해당 공모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불이익 적용을 받았을 경우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서 최종 제출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완료되지 않은 단체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산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수행한 단체
- ⑦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우수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
- ⑧ 공공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
- ⑨ 부산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수혜기간이 총 6년을 초과한 우수단체
- ⑩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혹은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는 제외)

- ⑪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부산 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및 재단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⑫ 「예술인복지법」 제6조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되어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나 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 될 수 있음
- 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신청한 단체

### ○ 신청불가능한 사업

- ① 당해년도에 동일 사업으로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② 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③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사업
- ④ 보조금 수령자의 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⑤ 기금 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⑥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사업

※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하여 중복 지원결정이 되는 경우 택일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라도 ‘신청불가능한 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취소 및 환수 조치

### □ 심의배제사항

- 지원신청자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 지원신청 제한사항(단체,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금 범위를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 필수제출 자료(지원신청서, 공연장등록증 등)를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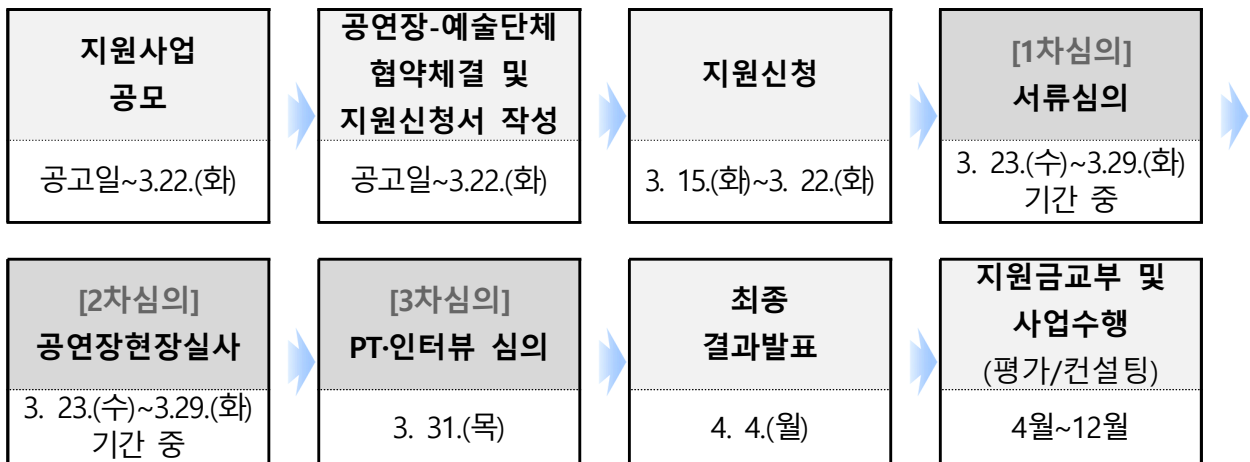
## □ 지원신청방법

- 공모기간: 공고일 ~ 3월 22일(화)
- 지원신청기간: 2022년 3월 15일(화) ~ 3월 22일(화) 18:00 마감
-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http://www.ncas.or.kr))를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 신청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 오류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능한 시간을 여유롭게 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신청시 시스템상 문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1577-8751)으로 문의.

## □ 지원사업 세부일정 **[예정]**



※ 심의일정은 지원자 수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다중신청 및 선정 관련 **[재단사업]**

- (1개)예술단체는 (1개)공연장과 협약하여 (1개)분야에만 신청가능
-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우수예술지원>과 동시에 선정될 경우 택1
- 2022년도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예정인 <예술가치확산지원>과 <주제특화예술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선정 불가

※ **예술가치확산지원:** 메세나활성화지원, 공공예술지원, 다원예술지원

※ **주제특화예술지원:** 레지던시활성화지원, 거리로나온예술지원, 재지원사업, 국제예술교류



## □ 심의세부절차

분 류	심의방식	심의내용	비고
1차심의	서류심의	· 필수자료 제출여부 확인 및 행정심의 · 공모신청서 서류 심의 (공연장/예술단체)	100점 공연장(40) 예술단체(60)



※ 1차 심의 평균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경우 2차 심의대상  
(심의위원이 7명일 경우 최대 최소 점수를 제외한 합계평균)

2차심의	공연장 현장실사	· 공연장 현장 실사 진행 · 공연장과 예술단체가 제시한 협업사항을 구현 할 수 있는지 공연장컨디션 및 부대시설 확인 및 질의응답	30점	
------	-------------	---	-----	--



3차심의	PT.인터뷰심의	· 공연장-예술단체 PT.인터뷰 심의	70점	최종선정
------	----------	----------------------	-----	------

※ 2,3차 심의 평균점수 합계 순위로 최종선정  
(심의위원이 7명일 경우, 최대 최소 점수를 제외한 합계평균)

## □ 심의기준

### ○ 1차 서류심의기준 (100점)

공연장 (40점)			예술단체 (60점)		
심의기준	심의 점수	심의지표	심의기준	심의 점수	심의지표
공연장 운영목적과 성과	15	- 공연장 운영목적 및 달성여부 - 기획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실적 -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예술단체의 활동실적 및 성과	10	- 예술단체의 활동 실적 및 성과 - 과거 활동을 토대로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예술단체와의 협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0	- 예술단체의 수행계획에 맞는 협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공연장 및 공간 무료제공 여부 - 기타 협업 및 예산지원 등 노력정도 등	공연장과의 협업의지 및 실현가능성	15	- 공연장과 협약 체결 여부 - 공연장의 운영목표에 맞는 협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기타 공연장과의 협업의지 및 노력정도 등
			예술단체의 조직역량	10	- 예술단체 구성원-협업 인력의 현황 및 전문성 - 예술단체의 조직운영 및 경영상태 등
시설 및 운영역량	15	- 시설 및 운영현황 (객석규모, 부대 시설 가동률 등) - 공연장 안전계획 - 공연장 인력 현황 및 역량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예술성 및 충실성	25	- 프로그램의 예술성 및 충실성 - 파급효과 및 기여도 - 예산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단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3년)의 충실성

○ 2차 · 3차 심의기준 (100점)

2차 공연장실사 (30점)			3차 PT 및 인터뷰심의 (70점)		
심의기준	심의점수	심의지표	심의기준	심의점수	심의지표
공연장 시설 및 인력현황	15	- 시설 및 운영현황 (객석규모, 부대 시설 가동률 등) 확인 - 공연장 인력 현황 확인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예술성 및 충실성	30	- 프로그램의 예술성 및 충실성 - 파급효과 및 기여도 - 예산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합리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단체(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한 장기 계획(3년)의 충실성
제안한 협업 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공간의 컨디션	15	- 예술단체와 공연장의 협업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및 컨디션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계획 및 실현가능성	20	- 공연장과 예술단체 구성원의 역량 및 전문성 -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
등록공연장 유무 및 의지	(최대) +3	- 등록공연장 유무 확인 - 미등록 공연장일 경우, 등록공연장 가능성 및 의지	파급효과 및 기여도	20	- 사업을 통한 해당분야 및 공연장 운영의 파급효과 및 예상되는 기여도 등

**제출서류**

- [서식1] 공연장-예술단체 육성지원 신청서 1부.
- [서식2] 협약서 1부.
-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유의사항**

- 공모일정 및 심의일정은 신청단체수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식이 변경 될 수 있음.
- 심의결과에 따라 다년도/단년도 지원으로 최종 결정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기본적으로 다년도(3년)지원 양식입니다. 단체와 공연장의 계획에 따라 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 1차 심의 이후 23차 심의 대상자는 심의전까지 PT자료를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공연장)는 재단에서 추진하는 비평 및 컨설팅 프로그램과 역량강화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사업 수행시 요건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임.

**문의처: 부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51-745-7232**